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447
----------	-----

제출년월일 : 2001년 8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소관부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

1. 제 안 사 유

-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은 생활체육의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므로 증평 주민의 숙원사업임.
- 증평지역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20여개의 경기단체(2,300여명)가 활동하고 있으나, 실내체육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2001년도 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30억원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인 지방비(시설비 30억원, 부지매입비 10억원)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재산의 취득

- 위 치 : 괴산군 증평읍 송산리 235번지 일대(운동장 시설 부지)
- 규 모 : 부지 19,800㎡, 건축연면적 4,000㎡(지하1층, 지상2층)
 - 지하층 : 샤워실,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 1 층 : 불링장, 체력단련실, 관리실, 휴식공간 등
 - 2 층 : 간이골프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회의실 등
- 용 도 : 체육시설
- 사업기간 : 2001. 9월 ~ 2003. 12월
- 사 업 비 : 7,000,000천원(국비 3,000,000, 도비 등 4,000,000)

3. 예산사항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산의 취득	재산의 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고
증평종합스포츠 센터 건립	7,000,000	-	-	-	토지 건물 공작물 등

4.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계	토지	-	-	-	28	19,800	1,000,000	28	19,800	1,000,000	
		건물	-	-	-	1	4,000	6,000,000	1	4,000	6,000,000	
		기타	-	-	-							
특	1.매입	토지			28	19,800	1,000,000	28	19,800	1,000,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인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1	4,000	6,000,000	1	4,000	6,000,000	
		기타										
차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인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001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소		성명
계	토지 건물		19,800 4,000	1,000,000 6,000,000					
1		중평읍 송산리	4,000	6,000,000	2001~ 2003	「중평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충청북도 지사	건물 신축
2	답	송산리 222-2	55	2,750	2001~ 2002	「중평종합 스포츠센터」 건립부지	중평읍 중평리 951		정기선
3	답	송산리 224-2	15	750	·	·	중평읍 송산리 455		이우규
4	답	송산리 225-1	110	5,500	·	·	서울 강북 미아 301-57		이인규
5	답	송산리 226-5	2,860	143,000	·	·	청주 상당 율량 715 대창A 102-1403		배종영
6	전	송산리 226-10	515	25,750	·	·	대구 달서 송현동 50 그린맨션 106-1203호		이장규
7	답	송산리 226-11	830	41,500	·	·	서울 강북 미아 301-57		이인규
8	전	송산리 232	150	7,500	·	·	괴산 사리 사담 849-1		최의식
9	전	송산리 233	1,759	84,432	·	·	괴산 사리 사담 849-1		최의식
10	답	송산리 234	515	25,750	·	·	괴산 사리 사담 849-1		최의식
11	답	송산리 235	949	47,450	·	·	중평읍 중평리 후포A 나동307		김용기
12	답	송산리 237-1	163	8,150	·	·	중평읍 중평리 후포A 나-307		김용기
13	답	송산리 238	1,010	50,500	·	·	중평읍 송산리 454		이순규
14	답	송산리 252-1	617	30,850	·	·	중평읍 연탄리 661		이규봉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가 정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 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소	성명	
15	답	송산리 252-3	95	4,750	2001~ 2002	「증평종합 스포츠센터」 건립부지	증평읍 연탄리 232-1	윤금자	
16	답	송산리 252-4	1,319	71,831	*	*	증평읍 연탄리 232-1	윤금자	
17	답	송산리 253	2,145	115,830	*	*	증평읍 송산리 455	이갑노	
18	답	송산리 254-1	1,219	60,950	*	*	증평읍 연탄리 775	정만영	
19	천	송산리 649-2	1,210	60,500	*	*	증평읍 연탄리 221	김호범	
20	천	송산리 649-5	97	4,850	*	*		국 (건설부)	
21	천	송산리 649-7	620	31,000	*	*		국 (재무부)	
22	천	송산리 649-8	263	13,150	*	*		국 (재무부)	
23	천	송산리 649-9	1,800	99,000	*	*		국 (건설부)	
24	천	송산리 649-10	122	6,100	*	*		국 (재무부)	
25	답	송산리 667-2	57	2,907	*	*		국 (재경부)	
26	구거	송산리 698	618	20,900	*	*		국 (국세청)	
27	천	연탄리 903-2	347	17,350	*	*	증평읍 연탄리 221	김호범	
28	천	연탄리 903-9	121	6,050	*	*		국 (재무부)	
29	천	연탄리 903-10	219	10,950	*	*		국 (재무부)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관리)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13호서식) 2~5호 생략